관 변 경(案)

현 행	변 경 (안)	ы) <u>э</u>	1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		
정 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		
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		
	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		
	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u>수 있다.</u>		
④ <u>제2항</u>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④ <u>제1항</u>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한다.		
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		
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		
	<u>의로 정한다.</u>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		
	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u>다.</u>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u> </u>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임·직원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임·직원		
(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u>상법 시행령 제30조</u> 에서 정하는 관계회사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	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	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는 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회사는 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5 (생략)	② ~ ⑤ (현행과 동일)	상법 시행령	개정
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사항 반영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u>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u> 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u>내에 행사할 수 있다.</u> 		
의 설의도 성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u>수 있다. 단, 이 경우 구석배구선덕권을 꾸</u> 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	<u>설의일부터 Z턴이상 재임 또는 재식하여야</u>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로부터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있다.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		
· · · · ·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		
	다.		

현 행	변 경 (안)	비	고
⑦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u>⑧</u> (현행과 동일)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u>⑧</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	⑨ (현행과 동일)		
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월 ㅜ ᆻ౮.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제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		
	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		
	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		
	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u>경우</u>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의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		
	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 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		
	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자본시장법] 개정
	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항 반영	2110
	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1020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		
	<u>야 한다.</u>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		
	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		
	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		
	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		
	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u> 방식</u>		

현 행	변 경 (안)	비고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③ (현행과 동일)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		
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④ (현행과 동일)	
ㅡ 액면총액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		
원은 제7조의2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		
가액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		
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사채	⑤ (현행과 동일)	
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전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		
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u>⑥</u> (현행과 동일)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		
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	
제14조(신수인수권무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	<u>세14소(선구선구천구사세의 혈행) ①의 외</u> 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	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	
	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	
	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	
	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의 제1항 제1호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사항 반영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70 20
	월 기외를 구역하고 이에 따다 정확을 만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	
	<u>야 한다.</u>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	
	저 아니만 사세가 있는 경구 이를 불극 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u>. , , , , , , , , , , , , , , , , , , ,</u>	·

현 행	변 경 (안)	비고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 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	
	<u>중 선계 됩니에서 경이는 됩니적인 기단</u> 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	
	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	<u> </u>	
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	④ (현행과 동일)	
채의 액면총액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제7조의2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		
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	⑤ (현행과 동일)	
당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		
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u>⑥</u> (현행과 동일)	
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이사와 감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현행과 동	
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	일)	
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		
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	②	
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		
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	그러나 감	
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	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인의 계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자구수정
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 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	
	천을 위임한 사가 조유하는 의결권있는 <u>누</u> 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	③ (현행과 동일)	
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1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 칙 (2014. 3. 21)	
	이 정관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